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09. 0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 화 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883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김화숙 의원(발의의원 13명)
- 나. 제 안 일 : 2019. 08. 07.
- 다. 회 부 일 : 2019. 08.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그간 시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유족(선순위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본인 또는 유

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현행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확대(안 제7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1)에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은 국가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8. 4.]

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상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정된 바, 국가 유공자 유족에 대한 배려 및 예우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9. 15.>
-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 ⑦ 삭제 <1994. 12. 31.>
- ⑧ 삭제 <2000. 12. 30.>[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왔던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상의 지원대상과 일치 시키고 유공자의 헌신·희생에 대한 보답하는 보훈정책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사회형평성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4종

(‘19년 8월 기준)

구 분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
대 상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4·19 및 5·18유공자, 특수입무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인 원	36,600명	3,950명	485명	11명
지급액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0만원 ※ 사망시 조의금 1백만원

■ 기념일 위문금 지급(5회)

- 지급시기 : 기념일(3.1, 4.19, 5.18, 8.15), 호국보훈의 달(6월)
- 대 상 : 유공자 및 유족(28,434명), 9개 보훈단체 자치구 지회, 보훈병원 위문금
- 세부지급액

(‘19.8월 기준)

구 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구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천원)
3·1 위문	1,900	개인별 100	호국보훈의 달(6월)	17,716	908,100
4·19 위문	300	개인별 100	중상이자 등	446	개인별 100
5·18 위문	550	개인별 100	80세 이상 등	14,978	개인별 50
8·15 위문	7,968	개인별 100	전몰군경 배우자 등	2,292	개인별 50

※ 보훈단체 자치구 223개 지회(총66,900천원, 각30만원), 보훈병원(300만원)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왔던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족들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보훈정책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사회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